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173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안전시설 설치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조항에 따른 내용 추가
- 나. 상위법 조항에 따른 조례 신설
- 다. 상위법에 따른 별표 제1호 위반사항 및 근거조항 번호 수정
- 라. 제명 및 별지 제2·3호 서식 띄어쓰기 수정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10. 5. ~ 10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새마포담당관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3. 11. 8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 
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”을 “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  
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비치와”를 “비치 및”으로, “유지하도록”을 “유지하고 안전한  
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7조제4항에서 “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 
공중화장실등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
2.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 
유지하기”를 “공중화장실의 청결, 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 중 “영 제8조제1항”을 “영 제8조”로 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제2호제1호의 근거조항란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제2호의 근거조항란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제2호가. 위반사항란 가목 중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제2호나. 위반사항란 나목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제3호의 근거조항란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제4호의 근거조항란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제5호 근거조항란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</p>	<p>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 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----- -----.</p>
<p>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설치·관리자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비치 및 -----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설치기준) ① (생 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5조(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법 제7조제4항에서 “안전관리</p>

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공중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~ 3. (생략)

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. , <단서신설

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

- 1. 구청장과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
- 2.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

제9조(공중화장실의 유지·관리) ----- 공중화장실의 청결, 위생적 유지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-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 ----- 영 제8조 -----.

2020.7.9.>

② (생 략)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 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 
정한다.

【별표 제1호】

위 반 사 항	근거조 항	부 과 금 액		
		1 차	2 차	3 차
1.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가. 제6조 공중화 장실 설치명령 불 응 나. 제10조 이동 화장실 설치명령 불응	법 제21 조 제1 항 제1호			
		20	40	60
2.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·관리기 준을 위반한 때	법 제21 조 제1 항 제2호			
		10	20	30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 
시행한다.

【별표 제1호】

위 반 사 항	근거조 항	부 과 금 액		
		1 차	2 차	3 차
1.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가. 제6조 공중화 장실 설치명령 불 응 나. 제10조 이동 화장실 설치명령 불응	법 제21 조 제2 항 제1호			
		20	40	60
2.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·관리기 준을 위반한 때	법 제21 조 제2 항 제2호			
		10	20	30

가.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		10	20	30
나. 제11조 제4항 설치·관리기준 위반		20	30	40
3.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	법 제21조 제1항 제3호			
가.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		20	40	60
나.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		10	20	30
4.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	법 제21조 제1항 제4호	10	20	30
5. 공중화장실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때	법 제21조 제2항	5	10	20

가.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		10	20	30
나. 제11조 제5항 설치·관리기준 위반		20	30	40
3.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	법 제21조 제2항 제3호			
가.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		20	40	60
나.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		10	20	30
4.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	법 제21조 제2항 제4호	10	20	30
5. 공중화장실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한때	법 제21조 제3항	5	10	20

[별지 제2호 서식]

유료화장실 <input type="checkbox"/>		처리기간
신고서		3일
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고서		
신상		
칭호(명)		

[별지 제2호 서식]

유료화장실 <input type="checkbox"/>		처리기간
신고서		3일
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고서		
신상		
칭호(명)		



인	칭)											
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							
	주소											
시설현황	소재지			관리주체								
	관리인	(전화번호)		설치년도								
	규모	부지 : m <sup>2</sup> , 화장실면적 : m <sup>2</sup>										
시설내역	대변기 수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					
		남자용	여자용	장애인용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	서양식				
	편의시설	세면기	에어타올(페이퍼타올)	환풍기	화장지	비누	방향제	유무	유무	유무	유무	유무
1회 사용료	원											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.												
신고인 :		(날인 또										

인	칭)										
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						
	주소										
시설현황	소재지			관리주체							
	관리인	(전화번호)		설치년도							
	규모	부지 : m <sup>2</sup> , 화장실면적 : m <sup>2</sup>									
시설내역	대변기 수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				
		남자용	여자용	장애인용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	서양식			
	편의시설	세면기	에어타올(페이퍼타올)	환풍기	화장지	비누	방향제	유무	유무	유무	유무
1회 사용료	원										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.											
신고인 :		(날인 또									

는 서명)	
마포구청장 귀하	
구비서류 1. 화장실 내부 평면도 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. 화장실 사용료 산출 내역서	수 수 료  없 음

는 서명)	
마포구청장 귀하	
구비서류 1. 화장실 내부 평면도 2.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. 화장실 사용료 산출 내역서	수 수 료  없 음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제 호  
유료 화장실 신고 필증

제 호  
유료 화장실 신고 필증

대표지	상호(명칭)						
	성명						
	주소						
관리인		(전화번호 : )					
시설내역	대변기 수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
		남자용	여자용	장애인용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
편의시설	세면시설		에어타올 (페이퍼타올)		환풍기		
	대		대		대		
1회 사용료	원						
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 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.							
						년	
						월	일
마 포 구 청 장 인							

대표지	상호(명칭)						
	성명						
	주소						
관리인		(전화번호 : )					
시설내역	대변기 수	소변기 수		대변기 유형			
		남자용	여자용	장애인용	성인용	유아용	동양식
편의시설	세면시설		에어타올 (페이퍼타올)		환풍기		
	대		대		대		
1회 사용료	원						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.							
						년	
						월	일
마 포 구 청 장 인							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김태성
연 락 처	02-3153-9234